

#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40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10월 16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 
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위문금의 지급근거 신설(안 제7조제6항)

나.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수정(안 제7조제7항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신설·강화되는 규제가 없음

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제출

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원안동의
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
- (5) 시민협력과(공공갈등진단): 현재 갈등이 내재되었거나 진행  
사항이 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 :  
해당없음

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 (2023. 8.17.~ 9.6.) 결과: 의견없음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 :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김미영(☎2133-7330)

##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범위 내”를 각각 “범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중 “생활보조수당 및 제4항의 보훈예우수당”을 “생활보조수당, 제4항의 보훈예우수당 및 제6항의 위문금”으로 한다.

⑥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4·19혁명기념일, 5·18민주화운동기념일, 호국보훈의 달 기념일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복지 및 생업지원) ①·② (생 략)</p> <p>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(본인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인)가 65세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1개월 이상 거주하며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<u>범위</u> 내에서 생활보조수당 월 2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>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(유족 및 가족 제외)가 65세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 예산의 <u>범위</u> 내에서 보훈예우수당 월 1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⑤ (생 략)</p>	<p>제7조(복지 및 생업지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범위</u>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범위</u>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
<신 설>

⑥ 제3항의 생활보조수당 및 제4항의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.

⑥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4·19혁명기념일, 5·18민주화운동 기념일, 호국보훈의 달 기념일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⑦ ----- 생활보조수당, 제4항의 보훈예우수당 및 제6항의 위문금  
-----  
-----.

「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비 용 추 계 서

### I. 비용추계 요약

#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4·19, 5·18, 호국보훈의 달 유공자 위문금 지급에 따른 예산 소요

#### 2. 비용추계의 전제

##### 가. 전제

- 4·19, 5·18 유공자 인원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지급인원(약 900명)을 반영하여 적용함
- 호국보훈의 달 유공자 인원은 최근 3년간 감소추이를 반영하여 연 평균 3.1% 감소율을 적용함
- 1인당 지급액은 4·19 위문금 100,000원, 5·18 위문금 100,000원,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50,000원으로 변동없음을 전제함
- 비용추계 기간 이후에도 비용은 발생함

나. 추계기간 : 5년(2024년~2028년)

#### 3. 비용추계의 결과

- 총 비용(합계) ≍ 4,067,100천원

(단위 : 천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 (2024년)	2차년도 (2025년)	3차년도 (2026년)	4차년도 (2027년)	5차년도 (2028년)	합 계
세입	소계(a)	-	-	-	-	-	-
세출	위문금 지급으로 인한 소요예산 (안 제7조 제6항 및 제7항)	859,700	835,800	812,700	790,300	768,600	4,067,100
	총 비용(b-a)	859,700	835,800	812,700	790,300	768,600	4,067,100

#### 4. 재원조달 방안 : 전액 시비(일반회계 편성)

#### 5. 작성자 :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김미영

##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### 1. 보훈대상자 현황

- 4.19, 5.18 유공자 인원은 전·출입 등으로 '21년~'23년(3년간) **연평균 약 900명**임

(단위: 명)

구 분		'21년	'22년	'23년
유공자 수	4.19, 5.18	920	896	895

- 호국보훈의 달 유공자는 고령화로 인한 사망 등으로 '21년~'23년(3년간) **평균 3.1% 감소하고 있음**

(단위: 명)

구 분	'20년	'21년	'22년	'23년
유공자 수	17,549	18,084	15,995	15,886
전년 대비	-	↑535 (↑3.0%)	△2,089 (△11.6%)	△109 (△0.7%)

### 2. 위문금 지원대상자 예상 추이

- 4.19, 5.18 유공자 : 연평균 지급인원(900명) 반영
- 호국보훈의 달 유공자 : 연 3.1% 감소율 적용

(단위: 명)

구 분		'23년	'24년	'25년	'26년	'27년	'28년	합계 ( '24~'28)
지급인원	4.19, 5.18	895	900	900	900	900	900	4,500
	호국보훈의 달	15,886	15,394	14,916	14,454	14,006	13,572	72,321

### 3. 위문금 지급액

- '24년~'28년 위문금 연간 지급액 총계 ≒ 4,067백만원

(단위: 명, 백만원)

구 분		'24년	'25년	'26년	'27년	'28년	합계 ( '24~'28)
지급인원	4.19, 5.18(a)	900	900	900	900	900	4,500
	호국보훈의 달(b)	15,394	14,916	14,454	14,006	13,572	72,342
소요예산 (a*100,000원+b*50,000원)		860	836	813	790	769	4,067